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6. 6. 8.>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시·도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명	사무국의 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5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장흥군, 해남군, 무안군, 영광군	14
부산광역시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14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7
인천광역시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5
경 기 도	수원시장안구, 수원시권선구, 수원시팔달구, 수원시영통구, 성남시수정구, 성남시중원구, 성남시분당구, 의정부시,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 부천시원미구,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구,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고양시일산서구,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만세구, 화성시효행구, 화성시병점구, 화성시동탄구,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파주시, 포천시, 이천시, 용인시처인구, 용인시기흥구, 용인시수지구, 안성시, 김포시	4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영월군	6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청주시서원구, 청주시흥덕구, 청주시청원구,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음성군	8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천안시동남구,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전주시덕진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8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12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마산합포구, 창원시마산회원구, 창원시진해구,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거창군	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2